#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연월일 : 2024. 11. . 의 안 5467 번 호

제 안 자: 행정안전위원장

## 1.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제출)	발의(제출) 일자	심 사 경 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2024.06.10.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2024.09.0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4.09.24.) 상정
	신영대	2024.06.18.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2024.09.0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4.09.24.) 상정
	이해식	2024.07.02.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 심사제2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09.23.) 제418회 국회(정기회)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2024.09.24.) 상정
	박성훈	2024.07.24.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 심사제2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09.23.) 제418회 국회(정기회)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2024.09.24.) 상정
	서영교	2024.08.06.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 심사제2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09.23.) 제418회 국회(정기회)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2024.09.24.) 상정
	이종배	2024.08.13.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 심사제2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09.23.) 제418회 국회(정기회)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2024.09.24.)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
	김승수	2024.08.19.	심사제2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09.23.)
	цог	2024.00.13.	제418회 국회(정기회)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2024.09.24.) 상정	
	곽규택 2024.09.20.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
		심사제2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09.23.)	
		2024.09.20.	제418회 국회(정기회)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2024.09.24.) 상정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
	21 -1 - 200 4 00 00	심사제2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09.23.)	
신정훈	2024.09.23.	제418회 국회(정기회)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2024.09.24.)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4. 9. 24.)는 위 9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9. 25.)는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이른바 '술타기 수법'과 같이 자동차등이나 자전거등을 운전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한 사람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도록 하며, 필요적 면허취소·운전면허 결격제도 등

에 있어서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동일한 처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이른바 '술타기 수법'과 같이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측 정 방해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44조제5항 신설).
- 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 대한 법정형을 음주측정 거부자와 같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안 제148조의2제2항 개정), 자전거등(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자의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음주측정 거부행위와 동일하게 정하며(안 제156조제12의2호 신설), 10년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함(안 제148조의2제1항 개정).
- 다. 음주 측정 거부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필요적 면허 취소, 운전면 허 결격제도(제82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제80조의2)가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80조의2제1항·제82조제2항·제93조제1항 개정).

법률 제 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0조의2제1항 중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으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같은 조 제1항, 제 2항 또는 제5항"으로 한다.
- 제82조제2항제3호가목 중 "제44조"를 "제44조제1항·제2항으로", 같은 호 나목 중 "제44조"를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에 다목 및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제44조제5항과 관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 를 하지 아니하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라. 제44조제5항과 관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제82조제2항제5호 중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제6호나목 또는 다목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44조제5항과 관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제3호, 제7호,"를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제44조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 행위를 한 경우

- 제1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을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을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44조제2항을"을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 제156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의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적용례) 제80 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4조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4조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
전 금지) ① ~ ④ (생 략)	전 금지) ① ~ ④ (현행과 같
	승)
<u>&lt;신 설&gt;</u>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
	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
	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
	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
	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
	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u>⑤</u> (생 략)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
착 조건부 운전면허) ① <u>제44</u>	착 조건부 운전면허) ① <u>제44</u>
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	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
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	
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	
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한 날	

부터 5년 이내에 다시 <u>같은 조</u> <u>제1항 또는 제2항을</u>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 "조건부운전면허"라 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 ② · ③ (생 략)
-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저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 1. · 2. (생략)
  -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

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
② · ③ (현행과 같음)
세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2. (현행과 같음)
3

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

- 가. <u>제44조</u>, 제45조 또는 제4 6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 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 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 우
- 나. 제44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신 설>

가. 제44조제1항·제2항
· · · · · · · · · · · · · · · · · · ·
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u> </u>
다. 제44조제5항과 관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
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
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8 2 十 1104118 天

<신 설>

5.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 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 우(제43조 또는 제96조제3 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 라. 제44조제5항과 관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제4 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 5. 제6호나목 또는 다목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 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 도 포함한다)한 경우-----

- 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 앗은 사람이 제43조를 위반 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3년
-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 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 가. <u>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u>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한 경우
  - 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신 설>

	_
6.	
0.	
	가.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
	나. <u>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u> -
	다. 제44조제5항과 관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
	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다.·라. (생 략)

7. ~ 10. (생 략)

③ (생략)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7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 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 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 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 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 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 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 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 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

<u>일으</u>	키고	음주	수측정병	<u>} 해 행</u>
위를	한 7	경우(>	제43조	또는
제963	조제3	항을	함께	위반
 한 경	우도	포함	한다)	

라.·마. (현행 다목 및 라목과 같음)

- 7. ~ 10.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u>제</u>
2호, 제3호, 제3호	호의2, 제7호,

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 단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 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 3. (생략)

<신 설>

1. (현행과 같음)
2. 제44조제1항, 제2항 후단 또
<u>는 제5항</u>
3. (현행과 같음)
3의2.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u> </u>
- 경월단면 경경면 의표가 왔

4. ~ 23.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3. (생략)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는 사람이 자동자능을 운전
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4. ~ 2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8조의2(벌칙) ① <u>제44조제1</u>
<u>항, 제2항 또는 제5항을</u>
같은 조 제1
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u>.</u>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u>.</u>
· 2.·3.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 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 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④ (생 략)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156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 12. (생 략) <신 설>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 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 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 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 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 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u>노면전차를 운전</u>한 후 음주 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 ③ · ④ (현행과 같음)

1. ~ 12. (현행과 같음)

12의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 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5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등 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

	행위를 한 사람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